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일몰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 관련 운영기준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완화(안 별표 2 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6) 중 “육탕”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3) 중 “영유아로서”를 “아동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호시설 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제6조 관련) 3. 구조 및 설비 6) 목욕실 <u>욕탕, 샤워설비</u>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 관리 3)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u>영유아</u>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시설 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제6조 관련) 3. 구조 및 설비 6) 목욕실 <u>샤워설비</u>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 관리 3)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u>아동</u>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